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07
----------	-------

발의연월일 : 2023. 6. 21.

발 의 자 : 이동주 · 박상혁 · 우원식
서동용 · 민형배 · 전해철
윤후덕 · 양정숙 · 이수진(비)
윤영덕 · 조오섭 · 허종식
김용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행위는 ASF, 구제역 등의 주요 전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스페인은 1960년 ASF 발생으로 유럽 최초로 잔반급여를 금지하고, 유럽에서는 과거 광우병·구제역·돼지열병(CSF) 발생 이후 유럽연합(EU) 규정(Regulation EC No 1069/2009)에 따라 20여 년 전부터 잔반급여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실제로 중국의 ASF 발생 111건의 역학조사 결과 44%에 달하는 49건의 경우 잔반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잔반급여를 차단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다양한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금지하여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제11항 및

제60조제1항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⑪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국내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급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11항을 위반하여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